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99

발의연월일: 2022. 1. 27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김성원 · 김정재

추경호 • 구자근 • 윤창현

이 용・지성호・김태호

이종배 · 김승수 · 조명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 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.

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, 독일 및 일본 등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,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 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%가 60대 이상으로,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임.

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.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한편,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,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,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,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 또한,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.

이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,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%에서 15%로,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%에서 30%로,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,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,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

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(안 제18조제2항제1호).

- 나.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(안 제18조제6항).
- 다.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,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(안 제18조제6항제1호).
- 라.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%에서 15%로, 비상 장법인의 경우 현행 50%에서 30%로,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 년으로 낮추고,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(주된 업종 변경 가능)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"으로 하고, 같은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호 가목 중 "10년"을 각각 "5년"으로 하며, 같은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"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"을 "5년"으로 하고, 같은항 제1호가목중"20(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는 100분의 10)"을 "50"으로하며, 같은호 나목중 "경우"를 "경우(주된업종의 변경은해당하지아니한다)"로하고,같은호라목을 삭제하며,같은호마목1)및 2)를 각각다음과같이한다.

- 1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 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- 2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기초공제)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. 이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]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 -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-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 - 나.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 등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)로 취임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기초공제) ① (생 략)	제18조(기초공제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	2
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	
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	
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	
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	1[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
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	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
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	(주된 업종 변경 가능)하는 대
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	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
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	또는 중견기업
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	
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	
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	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
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<u>10년</u>	<u>5년</u>
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	
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	

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경우: 200억원나. ·다. (생략)

- 2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 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) 부터 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 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 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(제1호가목만 해당한다)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

가 <u>5년</u>
<u>5년</u>
_ _

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.

- 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이상을 처분한 경우
 - 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게 된 <u>경우</u>

다. (생략)

- <u>라. 다음 1) 및 2)에 모두 해</u> <u>당하는 경우</u>
 - 1)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정규직 근로자"라 한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

1
가
<u>50</u>
나
<u>경우</u>
(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
하지 아니한다)
다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 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 에서 "기준고용인원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 달하는 경우

- 2)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변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급여액(이하 이 조에서 "총급여액"이라 한다)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총급여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- 마. 다음 1) 및 2)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
 - 1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

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

마.												_			_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-	--	--	---

1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

사업연도말부터7년간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

 2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

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

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

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

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

 는 경우

2. (생 략) ⑦ ~ ① (생 략) <신 설>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의 100분의 80에 미달하 는 경우

2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사업연도말부터 5년간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80에 미달하는 경우

2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①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기초공제)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2 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

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[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] 이상을 5년 이상계속하여 보유할 것
-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- <u>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</u> <u>상일 것</u>
 - 나.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

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 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 행,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 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 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 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다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(개인사업 자의 경우 대표자)로 취임할 것